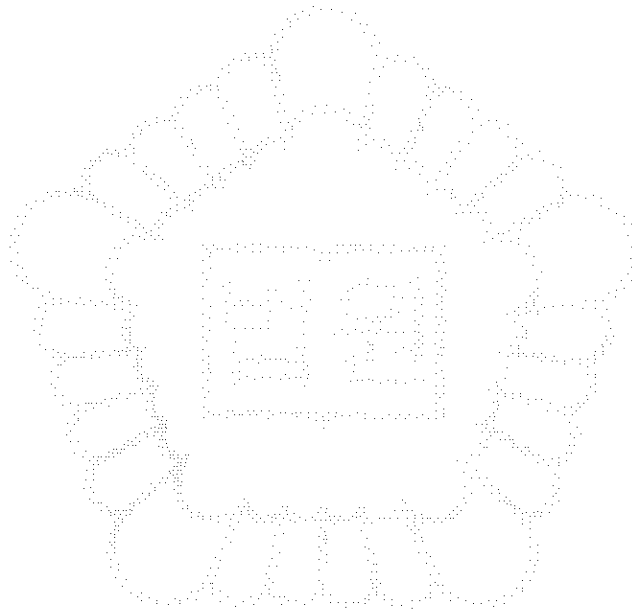




2012나39744

판 결 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3974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장경옥 (000000-00000000)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09가소32866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2003. 11. 1.자"를 "2003. 11. 11.자"로, 제5쪽 제8행의 "피고는"을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로 각 고치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의 권리이고 변호인에게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2006. 11. 8.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조사 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인 원고를 수사실에서 끌어낸 퇴거처분(이하 이 사건 퇴거처

분이라고 한다)과 함께 []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종료되어 원고를 퇴거시킨다고 하여도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를 수사실에서 끌어낸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 퇴거처분 당시 위 수사관들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2. 5. 6.자 2000모112 결정 등 참조). 또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양심과 정의, 직업상의 윤리적 요소가 가미된 인격체로서의 변호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민법 제751조가 정하고 있는 인격적 법익의 하나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며,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원고를 퇴거시킨 행위 자체로 이미 변호인인 원고의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의 종료 혹은 계속 여부는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2항 및 위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퇴거처분은 원고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 위 수사관들은 수사전문가로서 헌법이나 관련 형사소송법, 판례 등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할 당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나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던 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참여는 2007. 6. 1.에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관련 헌법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등 사법기관의 판단내용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판단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수사관들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퇴거처분에 의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수사관들에게는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수사관들이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준용하고 있던 대검찰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원고를 퇴거시켰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박인식



판사

이상아

이상아



판사

강현구

강현구





정본입니다.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조병규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